



약품리스트의 영업비밀 해당성 판단 및 부정취득에 관한 영업금지 등 청구사건

29

01 서지 사항

국가 법원	일본 도쿄지방법원	사건번호	평성16년(와) 제18865호
판결 일자	2005. 2. 25.	판결 결과	원고 청구기각
원고	주식회사 와카바(わかば)		
피고	성명 미기재		
참조 법령	부정경쟁방지법		
영업 비밀	약품리스트		
키워드 (Keyword)	영업비밀, 비밀 관리성, 취업규칙		

02 사건 개요

원고는 약국경영, 의약품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A는 약사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피고 약국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 B는, 피고 A의 아버지이며, 약국개설허가신청서상, 피고약국의 개설자이다.

피고 A는, 1997년 6월 16일 원고에 취직하고 원고 약국에 관계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2003년 12월 25일자로 원고 대표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하자, 원고는 2004년 1월 26일 자에 피고 A를 해고 했다

피고들은, 2003년 12월 무렵에 원고 약국에 퇴직원을 제출한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2004년 2월 7일 원고 약국의 인근에, 피고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약국 모두 인근 F 의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를 주된 고객으로 하고 있다.

03 주요 쟁점

원 고	⇔	⇐	피 고
<p>본건 약품리스트는 원고 약국개설 이후 약 1 년간에 걸쳐, F의원 환자가 지참한 처방전에서, F의원이 처방하고 있는 약의 종류, 양 및 단가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F의원에게 도약도매상에서도 일절 공개되어 있지 않는 것이다.</p>			<p>본건 약품리스트는, 피고 A가, 가족의 단골의원인 F의원의 의사로부터 F의원 처방약품 리스트를 양도받은 것이다. 그 후, F의원에서 새롭게 처방하기 시작한 약품을 추가하였다.</p>
<p>상품인 약을 구입하여, 재고관리 상에서, 본건 약품리스트는 필요불가결이다.</p>			<p>F의원이 처방하는 약에 관한 정보로서, 본건 약품리스트 이외에도 F의원처방약품 리스트가 존재하고 있다.</p>
<p>취업규칙상 사외에 비밀로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비밀관리성에 결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p>			<p>원고 약국의 컴퓨터단말기를 조작할 수 있는 자는 이 단말기에서 본건 약품리스트에 수시로 접속하고 있다. 업무이외에 사용,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음을 인식시키는 표시를 붙이지 않고,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p>

04 판결 요지

본건 약품리스트는, 유용한 정보이긴 하나, F의원의 처방약과 혼연일체로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이 의원의 처방약 리스트와 별개로, 독립되고 유용성을 갖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본건 약품리스트의 실질적 내용을 차지하는 F의원에서 처방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동의원에서 같은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며, 이 의원에서는 그 정보를 자유롭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본건 약품리스트가 비밀 관리성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할 수 없다.

본건 약품리스트 데이터에 접속할 시에 비밀번호도 없고, 복사나 인쇄가 금지되어 있었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취업규칙상 규정은 그 대상이 되는 비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05 Key Point

비밀관리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간단한 작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취업규칙 상에 가능한 많은 정보를 비밀유지 대상품목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고, 또한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
